

조 정 조 서

사 건 [REDACTED] 대여금

원 고 [REDACTED]

조정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

피 고 [REDACTED]

조정장 판사 [REDACTED]

조 정 위 원 [REDACTED]

원고 조정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

출석

피고 [REDACTED]

출석

다음과 같이 조정성립

조 정 조 항

1. 피고는 원고에게 32,000,000원을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(계좌번호: [REDACTED])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, ① 2022. 11. 4.까지 700,000원, ② 2022. 12. 10.까지 3,000,000원, ③ 2023. 1.부터 2026. 3.까지 기간 동안 매월 10일에 월 700,000원씩, ④ 2026. 4. 10.까지 1,000,000원으로 총 4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.

만일, 피고가 위 ① 기재 700,000원의 지급을 지체하거나, 위 ② 기재 3,000,000원의 지급을 지체하거나, 위 ③ 기재 각 지급의무 및 위 ④ 기재 지급의무 중 3회분

(2,100,000원) 이상의 지급을 지체하면, 기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
2.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제1항의 ① 기재 700,000원을 지급받는 즉시, 피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[REDACTED] 호 채권가압류 사건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를 이행한다.
3. 피고는 원고가 위 제2항 기재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제공한 담보의 취소에 동의하고, 그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포기한다.
4.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.
5.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